

일립신학연구소 규정

제정 : 2008. 05. 01.

개정 : 2015. 02. 06.

개정 : 2015. 08. 07.

담당자 : 교학팀(02-950-5406)

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|
| ----- 목 차 ----- | | | |
| 제1조(목적) | 제2조(명칭) | 제3조(소재지) | 제4조(사업) |
| 제5조(조직) | 제5조2(임무) | 제6조(임원) | 제7조(연구원) |
| 제8조(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) | 제8조2(운영위원회의 역할) | 제9조(보고) | 제10조(논문집 발간) |
| 제11조(재정) | 제12조(회계연도) | | |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성서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.) 학칙 제76조에 따라 설립자인 일립 강태국 박사의 신학과 사상을 중심으로 신학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한국성서대학교 및 한국성서선교회와 한국 교회의 성서적 복음주의 보수신학의 정립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치하는 일립신학연구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2015.08.07)

제2조(명칭) 본 연구소는 한국성서대학교 부설 일립신학연구소(The Institute of Illib Theology, 이하 “본 연구소”라 칭한다.(개정15.02.06)

제3조(소재지) 삭제(개정2015.08.07)

제4조(사업)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- ① 일립의 생애와 사상에 관한 자료 확보와 이용 편의 제공
- ② 일립의 신학 및 사상 연구
- ③ 일립의 신학을 중심으로 한 신학 전반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성서적 복음주의 보수신학의 정립
- ④ 일립 신학 관련 저서 및 연구 논문집 발간
- ⑤ 일립 신학 및 사상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
- ⑥ 일립 신학의 입장에서 현대 한국교회와 사회에 대한 비판적 연구 및 대안 제시
- ⑥ 기타 본 연구소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

제5조(조직) ① 연구소에는 연구소장과 연구위원을 두고 필요에 따라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. (개정

2015.08.07)

② 연구소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연구위원은 연구소장이 본교 성서학과 교원 중에서 임명한다. 연구소장과 연구위원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한다. (개정2015.08.07)

제5조2(임무) ①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 (개정2015.08.07)

② 연구위원은 연구수행 및 연구소 운영을 담당한다. (개정2015.08.07)

③ 사무직원은 연구소장 및 연구위원의 업무를 보좌하고 연구소 사무 등 제반업무를 담당한다. (개정2015.08.07)

제6조(임원) 삭제(개정2015.08.07)

제7조(연구원) (개정2015.08.07)

제8조(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) ① 본 연구소에는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(개정2015.08.07)

② 위원회는 소장, 연구위원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(개정2015.08.07)

③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되며 연구위원은 연구소장이 임명한다. (개정2015.08.07)

④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교 「위원회 관리 규정[규정분류코드 2-1-3-2]」에 따른다. (개정2015.08.07)

제8조의2(운영위원회의 역할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(개정2015.08.07)

1. 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폐 (개정2015.08.07)
2. 연구기금의 조성 및 관리 (개정2015.08.07)
3. 연구계약 체결 (개정2015.08.07)
4.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 (개정2015.08.07)
5.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(개정2015.08.07)

제9조(보고) 삭제 (개정2015.08.07)

제10조(논문집 발간) ① 연구소에는 연1회 이상 논문집을 발간한다.

② 논문의 게재는 소정의 심의를 거친 연구소의 논문에 한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 인사의 논문도 실을 수 있다.

제11조(재정) ① 연구소의 연구 과제 수행을 위한 재정은 본 대학교에서 지급하는 연구 보조금과 기부금 및 사업 수입금으로 총당한다.

② 연구원의 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한국성서대학교의 학술연구비 지급 및 관리 규정과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③ 예산 및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실장에게 보고하되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(개정 2015. 08. 07)

제12조(회계연도)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02월 0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08월 07일부터 시행한다.